Γ	<b>Powerful pohang</b>						
	시보는	공문서	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과	의	 장		

Q	0	ሰ	Q		Q
			포형	사성	O

기 관 의 장 선 람

포항시보

제891호 2012. 7. 3(화)

### ◀ 입법예고 ▶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012-12호)·····
 2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12-13호)·····
 6

 ◀ 공 고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제2012-1146호)·····
 12

회				
람				

발행 : 포항시 편집 : 홍보담당관(☎270-2233)

190×268 신문용지 70g/m<sup>2</sup>

#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12호

# 공 고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포항시의회의장

##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남성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특히, 우리시 전체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도 10여개나 되어 남녀평등 이념실현에 부적합하므로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여 성차별적의식의 해소 및 여성능력개발과 건강한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100분의 30이상(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여성위원을 위촉함(안제4조 제2항)

###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7.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되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①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②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	
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	<u>다만, 여성위원은 위촉직 위</u>
	<u>원의 100분의 30 이상(소수점 이하</u>
	가 있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되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⑦ (생략)	③ ~ ⑦(현행과 같음)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13호

공 고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포항시의회의장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현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정화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 나. 위원회 위원 임기 2년 중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조정하기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1항)
  -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 9.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 10.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
  - 11.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 13. 정화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포항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조정(안 제6조제2항)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7. 4일 까지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본문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 9.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 10.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
- 11.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 13. 정화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공고)</b> <u>시장</u> 은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공고) <u>포항시</u>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u>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u>
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생 략)	<b>제4조(임용자격)</b>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
	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u>〈신 설〉</u>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
	<u>시설 설치·개선</u>
<u>〈신 설〉</u>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u>〈신 설〉</u>	9.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
	<u> 점검</u>
<u>〈신 설〉</u>	<u>10.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u>
	<u>따른 CCTV의 설치·보수</u>
<u>〈신 설〉</u>	11.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개장비
	<u>의 설치</u>
<u>〈신 설〉</u>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u> </u>	13. 정화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u>〈신 설〉</u>	<u>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u>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b>제5조(지원방법)</b> ① ~ ② (생 략)	<b>제5조(지원방법)</b>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	③
는 그 결과를 <u>당해</u> 공동주택의 관리	해당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 략)	<b>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b>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	②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하고,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	
는 시의원 2명, 관계공무원 5명, 주	
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 연임할 수 있다.</u>	<u>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u>
	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⑦(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2-1146호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 법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의 범칙금)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2, 7, 2,

포항시장 박 승 호

- 1. 공 고 기 간 : 2012. 7. 2. ~ 2012. 7. 21. (20일간)
- 2. 폐 차 장 소 : 포항시 관내 자동차해제재활용사업체 붙임 내역서 참조
- **3. 폐차 예정일** : 2012. 7. 23.부터
- **4**.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054)270-3643
-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6. 강제처리대상차량 : 대구29러7595호 외 3대

# 이해관계인 내역 강제처리대상 및

	所 沿 游 ( )	● 포항시남구 건설교통과 - 주정차위반(경북12허4564,06-1564)           ● 대구 동구 세무과 - 자동차세(2001, 12월) (2641)           교통과 - 주정차위반(2002-100580)           ●대구 북구 교통과 - 주정차위반(2002-39601)           ●대구 남구 교통과 - 주정차위반(경북12허4565, 2006-001813)           ●대구 남구 교통과 - 주정차위반(경북12허4565, 2006-001813)           ●대구 수성구 세무과(경수팀) - 지방세 체남 18건           교통과 - 책임보험 3, 검사자연 1           산업환경터 - 배출가스정밀검사 ('08.7.17.)           ●진주시 교통학정과 - 구정차위반(2002-5389)           ●대구수성경찰서 교통과 - 과태료(경기31허6280,06-040867)의2           ●국연찰선 경비교통과 - 과태료(경기31허6280,06-040867)의2           ●성화도 (주) - 대구지원 2002카단26438 ('02.7.18.)           표저당: 삼성캐피탈(주) '01.11.12.서울 종로 태평로2가 150           표저당: 이연덕 '02.5.24. 대구 수성구 두산동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 손해배상보장법위반체남 7건 ●포항시남구 세무과 - 지방세체남('10.8.19.) 건설교통과 - 주정차위반 5건 ●포항시북구 건설교통과 - 주정차위반 3건	●포함시복구 건설교통과 - 주정차위반 ('08.1.10.) ●부산진구 교통행정과 - (부산30L/6249)주정차위반과태료대압 ●연제구 교통행정과 - 작임보험 2, 주정차 1, 검사지연 1 세무과 - 자동차세등 3, 책임보험 2 세무과 - 자동차세등 11건 ●동래구 교통행정과 - 주정차 5, 책임보험 2 세무과 - 자동차세등 11건 ●후려 전체 - 11건 ●부산금정철삼 정비교통과 - 도로교통법위반('04.2.2.) ●부산금정철삼 정비교통과 - 모대료체방 2 ●근록지공단부산동래치사 - 산재고용보험료('03.3.7.) ⇒ 근로복지공단부산동래치사 - 산재고용보험료('06.7.5.) ⇒ 근로복지공단부산동점치사, 국민건강보험부산동래치사 -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동대치사 - 보험료체방('06.7.5.)	■ 서당 : 신새운 무산 사상구 감선동 '05.4.8. 설성
	방치장소 보관장소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73-3 (주)경북정비내 동해자동차해체재활용산 엄	포항시 남구 상공로 249-1 (88수족관 건너 편) 도로 포항자동차해체재활용산 업	포항시남구 청림동 1181 (정몽주로847번길 19)앞 도로 동해자동차해체재활용산	5]]
2012-07-02에서 2012-07-21까지	K⊦	총남 천안시 서북구 풍천원1길 5, 303호 (성정동, 이화빌라)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68번길 20-2 (해도동)	부산 동래구 금강공원로20번길 46, 2107호 (온천동, 르 메이에르 동래 타운)	
	차 명 주민번호	NEW EF쓰나타 801129- *******	0)世間 690801- ******	레조2.0S LPG MT 680923-	****
수 : 4 🏶 공고기간	자동차번호 성 명	대구29러7595 황지희	경북31다3306 임태환	17로6610	
◈ 총건수	관리번	2012– 90	2012– 100	2012-	

#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총건수 : 4 🔷 공고기간 : 2012-07-02에서 2012-07-21까지

		012927,-027498) 3.30) 003892) 1.9.1.) 世 高 177건 03.7.18.) E 云 23-4	102-25 '02.7.3.
下で配し	<b>子</b> 切 500	●포항시복구 건설교통과 - 주정차위반(2011-012927,-027498) ●경주시 교통행정과 - 주정차위반(*11.3.4, 3.30) ●영전시 생활경제교통과 - 주정차위반(2010-003892) ●대구 북구 세무과 - 지방세체박(*07.3.9.) 교통과 - 검사지연(*08.2.29, *11.9.1.) 환경관리과 - 배출가스정말검사(*08.1.14.) ●대구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 파태료체남처분 등 177건 ●서울보증보험 - 대구지원 2003카만53372 (*03.7.18.)	UI.S.24. ■ 저당 : 고성새마을금고 대구 북 고성동3가 102-25 '02.7.3.
망지상소	보관장소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189-2 (축도동) 제주도 야지와한우 앞 도로	대원오토D&R
K		대구 서구 원대로 41 (원대동1가)	
자 명	주민번호	NEW EF소나타 LPG	740821-
사농자번호	성명	07H8514	응 산 찬
小田元市	다디다	2012-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2년 6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2. 6. 28

포 항 시 수 돗 물 평 가 위 원 회 위 원 장

시 행 일 6월 중 검 사 기 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정 수

		정수장,상수원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성	학야
구	검 사 항 목	공급지역	안계댐수		임하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안계		진전지	눌태지수	곡강천 복류수	(수지원공사)
분		기준		동지역	부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신망,기계 일부
01	1.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0l하	0	0	0	0	0	0	0	0	0
생	2.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물	3.대장균(Escherichia Coli)	불검출/10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납(Pb)	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불소(F)	1.5mg/ℓ이하	0.16	불검출	불검출	0.19	0.19	불검출	불검출	0.18	불검출
건 강	6.비소(As)	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상	7.셀레늄(Se)	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유 해	8.수은(Hg)	0.001㎜/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영 향	9.시안(CN)	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무	10.크롬(Cr)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 물	11.암모니아성질소(NH3-N)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질	12.질산성질소(NO <sub>3</sub> -N)	10mg/ℓ이하	8.0	1.4	1.8	0.5	0.4	0.9	8.0	1.7	1.6
	13.카드뮴(Cd)	0.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보론(B)	1.0mg/ℓ이하	0.04	0.02	0.02	0.06	0.06	0.01	0.02	0.04	0.04
	15.페놀(Phenol)	0.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다이아지논(Diazinon)	0.02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파라티온(Parathion)	0.06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ŀ	18.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ℓ0lah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H	19.카바릴(Carbaryl) 20.1,1,1-트리클로로에탄	0.07mg/ℓ0lōl									
건	(1,1,1-Trichloroethane)	0.1 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강	21.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상 유	22.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해 영	23.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향	24.벤젠(Benzene)	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유 기	25.톨루엔(Toluene)	0.7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물	26.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27.크실렌(Xylene)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0.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0.002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1,4-다이옥산(1,4-Dioxane)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2.유리잔류염소 (Free residual chloring)	4.0mg/ℓ이하	0.71	0.57	0.61	0.74	0.69	0.61	0.65	0.58	0.84
ŀ	(Free residual chlorine) 33.총트리할로메탄(THMs)	0.1 mg/ℓ이하	0.060	0.031	0.051	0.055	0.054	0.024	0.041	0.018	0.029
	34.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ℓ이하	0.030	0.021	0.039	0.023	0.022	0.011	0.020	0.012	0.024
소	35.클로랄하이드레이트										
독제	(Chloral hydrate)	0.03mg/ℓ0lō⊦	0.0058	0.0090	0.0086	0.0058	0.0048	0.0078	0.0076	0.0036	0.0026
및	36.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Dibromoacetonitrile)	0.1 mg/ℓ이하	0.0008	불검출	불검출	0.0008	0.0010	불검출	0.0006	불검출	불검출
속	37.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Dichloroacetonitrile)	0.09㎜/ℓ이하	0.0019	0.0031	0.0024	0.0020	0.0015	0.0021	0.0022	0.0012	0.0019
부 산 물	38.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Trichloroacetonitrile)	0.004㎜/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9.할로아세틱에시드 (Haloacetic acids)	0.1 mg/ℓ이하	0.044	0.061	0.060	0.032	0.046	0.041	0.032	0.058	0.012
	40.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03mg/ℓ이하	0.021	0.004	0.012	0.020	0.020	0.004	0.015	0.005	0.005
	41.디브로모클로로메탄 (Dibromochloromethane)	0.1 mg/ℓ이하	0.009	0.006	불검출	0.012	0.012	0.009	0.006	0.001	불검출

			0.71	7 0	OF EI	TILO	CU TI	71.79	ш п	OF #4			
l <sub>₹</sub>		정수장,상수원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분	검 사 항 목	공급지역	안계	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안계	복류수 댐수	진전지	눌태지수	곡강천 복류수	(수자원공사)		
		기 준		동지의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신광,기계 일부		
	42.경도(Hardness)	300mg/ℓ0lōŀ	104	55	76	122	127	28	63	88	86		
	43.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₄)	10mg/ℓ이하	3.1	3.2	3.4	2.8	3.0	2.4	1.4	2.1	3.8		
	44.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5.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6.동(Cu)	1 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심	47.색도(Color)	5도이하	1	1	1	1	1	1	1	1	불검출		
미	48.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적 영	49.수소이온농도(pH)	5.8-8.5	7.0	6.8	6.8	7.1	7.0	6.2	6.4	6.7	7.3		
향 물	50.아연(Zn)	3mg/ℓ0 ō⊦	0.006	0.002	불검출	0.003	0.006	0.006	0.004	0.127	0.002		
질	51.염소이온(CI <sup>-</sup> )	250mg/ℓ이하	26	10	12	35	34	12	24	15	11		
	52.증발잔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179	90	127	235	233	70	144	162	153		
	53.철(Fe)	0.3㎜/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4.망간(Mn)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5.탁도(Turbidity)	0.5NTU이하	0.08	0.08	0.08	0.09	0.08	0.08	0.07	0.07	0.08		
	56.황산이온(SO <sub>4</sub> <sup>2-</sup> )	200mg/ℓ이하	53	14	19	74	72	12	34	42	20		
	57.알루미늄(AI)	0.2㎜/ℓ이하	0.02	불검출	0.02	0.03	0.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5		
	판 정	정수의 상기 형	남목에 대한	판 정 정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sup>\* :</sup> 학야정수장은 2012년 5월 중에 실시한 수질검사결과임

###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정수 장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기 준	용흥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동	택전리	문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	불검출									
3.대장균	불검출/100㎖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5.잔류염소	4.0mg/ℓ이하	0.47	0.41	0.41	0.44	0.48	0.39	0.44	0.45		
6.동	1 mg/ℓ이하	불검출	0.012								
7.아연	3mg/ℓ0lōŀ	0.023	0.004	0.002	0.009	0.011	0.006	0.004	0.190		
8.염소이온	250mg/ℓ0lōŀ	31	11	12	31	31	12	25	17		
9.철	0.3㎜/ℓ이하	불검출									
10.망간	0.05mg/ℓ이하	불검출									
판 정 수도꼭지 수돗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수돗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학야정수장 230-4792

포항시 민원센터 <sup>빨리콜프</sup>27인-8282

-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